

##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제갈공명 소득공제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□ 변경 사항 : ① 제1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
 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25. 4. 2.

□ 변경 내용

| 항 목  | 정정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 정 전   | 정 정 후  |
|--|--|---|--|
| <b>요약정보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|
| 투자비용   | 제1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<br>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| -   | <u>2025. 3. 16. 기준</u><br><br><u>2025. 2. 28. 기준</u> |
| 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<u>2025. 3. 16. 기준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운용전문인력  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<u>2025. 2. 28. 기준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|
| 5. 운용전문인력<br>가. 운용전문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<u>2025. 2. 28. 기준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운용전문인력<br>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<u>2025. 2. 28. 기준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br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  | 제1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                      | 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 (97.5% VaR 모형 사용) : <u>15.74%</u> | 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 (97.5% VaR 모형 사용) : <u>16.98%</u>  |
|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br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| 제1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<br>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| -   | <u>2025. 3. 16. 기준</u><br><br><u>2025. 2. 28. 기준</u> |



|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과세</p> | <p>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</p> | <p>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: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</p> <p>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 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 재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, 등록세,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</p> | <p>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: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</p> <p>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 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</p> <p><u>다만,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</u></p> <p><u>다만,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, 원천징수의무자(판매회사)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.</u></p> <p>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 재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, 등록세,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</p> |
|-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|
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1. 재무정보</p>           | <p>제1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</p> | <p>-</p> | <p><u>2025. 3. 16. 기준</u></p> |
| <p>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</p> | <p>제1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</p> | <p>-</p> | <p><u>2025. 3. 16. 기준</u></p> |

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3. 집합투자기구의<br>운용실적                | 제11기 재무제표 확<br>정에 따른 갱신 | - | <u>2025. 3. 16. 기준</u> |
|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집합투자업자에<br>관한 사항<br>가. 회사 개요  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             | - | <u>2025. 2. 28. 기준</u> |
| 1. 집합투자업자에<br>관한 사항<br>라. 운용자산 규모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             | - | <u>2025. 2. 28. 기준</u> |